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 결산서
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정병기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병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7일

발 의 자 : 정병기, 김육영, 양순임, 이용진,
소형준, 정윤주, 김경이, 경수현,
임태근, 오중균, 이호건, 이일준,
정기혁, 강수진, 임현주, 이관우,
진선아, 이인순

1. 제안이유

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,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함.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재무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11. 7. ~ 2023. 11. 13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
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
보고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	<p>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.</u></p>